

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5-13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제 출 자 : 박형덕 의원 외 5인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,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(2006. 10. 17)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를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로 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1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제1항으로 함.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여비의 지급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함.(안 제7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1항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별표 1의 현지교통비란의 “10,000” 을 “20,000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[별표 1] 국내여비지급표(제7조제2항 관련)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%;">구분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현 지 교 통 비 (1일 당)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/tr> <tr> <td>의원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<u>10,000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구분	-	-	-	-	현 지 교 통 비 (1일 당)	-	-	의원	-	-	-	-	<u>10,000</u>		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 33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제1항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] 국내여비지급표(제7조제2항 관련)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%;">구분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현 지 교 통 비 (1일 당)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td style="width: 5%;">-</td> </tr> <tr> <td>의원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<u>20,000</u>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/table>	구분	-	-	-	-	현 지 교 통 비 (1일 당)	-	-	의원	-	-	-	-	<u>20,000</u>	-	-
구분	-	-	-	-	현 지 교 통 비 (1일 당)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	-	-	-	-	<u>10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-	-	-	-	현 지 교 통 비 (1일 당)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	-	-	-	-	<u>20,000</u>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지방자치법시행령] (2006.10.17)

제15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법 제32조제2

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5에 의한 금액
2. 여비 :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
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 [전문개정 2006.2.8]